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00. 8. 31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7월 27일

○ 회부일자 : 2000년 7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  
위원회(2000. 8. 28) 상정, 제안설명 및 심의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가. 제안이유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및 개별조례로 규정된  
위임업무를 위임조례로 일원화하고

일부사무의 신규위임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

나. 주요골자

○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99. 4. 30)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업무의 조문정비(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개정('99. 2. 8)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어 위임조항 삭제(사회복지과)
- 전염병예방법 개정('99. 2. 8)에 따른 소독업의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변경(보건위생과)
- 공중위생법 제정('99. 2. 8)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를 면허정지로 조문정비(보건위생과)
- 양곡관리법 개정('99. 1. 21)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사항 등 조문정비(원예유통과)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99. 1. 28)으로 체육시설업종 신고업종에 대한 업무가 시·군자치사무로 이관되어 관련조문을 삭제(체육청소년과)
- 자동차관리법 개정('99. 4. 15)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시·군자치사무로 이관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자동차등록업무 및 이륜자동차관련업무 조문정비(교통도로과)
- 삭도·레도법 개정('99. 2. 8)으로 관련조문 정비(교통도로과)

#### ○ 개별 조례로 규정된 위임업무를 위임조례 일원화

- 종전의 농지개량관리조례에 규정된 수리계 관련업무를 위임조례로 일원화(농산지원과)
-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규정한 위임업무를 위임조례로 일원화(지역개발과)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99. 4. 15)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업무가 도업무로 이관되어 위임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지역개발과)
- 도시계획법 개정(2000. 1. 28)으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 업무가 시·도사무로 이관되어 위임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지역개발과)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99. 1. 29)으로 관련조문 정비 및 건설기계 사업 관련업무가 도로 이관되어 규칙을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 (지역개발과)

○ 신규 위임사무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신규위임 (경제과)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등 관련업무를 신규 위임 (체육청소년과)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 김 종 만)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구조조정 등으로 시·군 직원의 감원으로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인력과 예산 및 업무처리 지연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경제과 소관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야 별	일 번 련 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경 제 과	21	○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 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 사항의 신고수리 나. 통신판매업자의 휴·폐업의 신고수리 다. 영업의 정지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17조 동법률 제24조 동법률 제26조 동법률 제64조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사회복지과 소관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 내지 제16호를 제3호 내지 제14호로 한다.

분 야 별	일 번 련 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사회복지과	1	○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운용 및 시설 업무의 지도·감독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2	○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보건위생과 소관 제42호, 제50호,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야 별	일 번 련 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위생과	42	○ 소독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50	○ 이·미용사 면허증교부 및 재교부 (다만, 면허증 최초 교부당시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는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0조
	52	○ 이·미용사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단, 면허취소는 면허증 최초 교부 당시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는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농산지원과 소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농산지원과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리계 관련업무</li> <li>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li> <li>나. 수리계 조직 및 등록</li> <li>다. 수리계 규약 제출</li> <li>라. 수리계 예산 및 인력지원</li> <li>마. 기반시설의 개·보수등에 필요한 경비부과 및 납기인가</li> <li>바. 부과금액 재조정 및 재결에 관한 사항</li> <li>사.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li> <li>아. 해산승인 및 기반시설의 폐지 관리자의 지정</li> <li>자.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li> <li>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 제3조</li> <li>동조례 제4조, 제5조</li> <li>동조례 제6조</li> <li>동조례 제10조</li> <li>동조례 제11조</li> <li>동조례 제12조</li> <li>동조례 제13조</li> <li>동조례 제15조</li> <li>동조례 제16조</li> </ul>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원예유통과 소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내지 제8호를 삭제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원예유통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양곡 관리업무</li> <li>가.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li> <li>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li> <li>다. 양곡가공업에 대한 영업을정지, 등록의 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li> <li>동법 제36조 제1항</li> <li>동법 제21조 제1항</li> </ul>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체육청소년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수련시설 관련업무</li> <li>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li> <li>나. 청소년수련시설 폐지의 신고 수리</li> <li>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등록수리</li> <li>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등록증 교부</li> <li>마.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li> <li>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li> <li>사.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li> </ul>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청소년기본법 제34조의2 제2항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3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항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4항 청소년기본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청소년기본법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청소년기본법 제33조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지역개발과 소관 제10호 내지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지역개발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li> <li>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li> <li>나. 광고물등의 표시·신고수리에 관한사항</li> <li>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에 관한사항</li> <li>라. 가림간판규격의 설정</li> <li>마.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li> </ul>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동법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7항 및 제20조 제6항 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지역개발과		바.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사.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아.옥외광고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자.옥외광고물등의 허가취소 차.영업정지등에 관한 사항 카.허가·신고·안전도검사·옥외광고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타.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20조
	11	○ 전문건설업에 관한 다음사항 가.등록 나.변경사항 신고수리 다.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수리 라.업체에 대한 보고·조사·검사·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요구 마.시정명령·지시 바.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아.청문 자.과태료 부과·징수 차.등록대장의 작성·보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동법 제9조의2 동법 제17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81조 동법 제82조 동법 제83조 동법 제86조 동법 제101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12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와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동법시행령 제17조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지역개발과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도로(중로이하의 도로)</li> <li>나.주차장</li> <li>다.궤도</li> <li>라.삭도</li> <li>마.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li> <li>바.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li> <li>사.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li> <li>아.공원(어린이공원에 한함)</li> <li>자.관망탑</li> <li>차.공공용지</li> <li>카.수도</li> <li>타.전기공급설비(변전소에 한함)</li> <li>파.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li> <li>하.방송·통신시설</li> <li>거.시장</li> <li>너.열공급설비</li> <li>더.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li> <li>러.운동장(종합운동장 및 골프장 제외)</li> <li>머.공공청사(국가 및 도기관 청사는 제외)</li> <li>버.도서관</li> <li>서.문화시설</li> </ul> </li> </ul>	도시계획법 제24조

분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지역개발과		어.연구시설 저.사회복지시설 처.공공직업훈련시설 카.청소년수련시설 타.유수지 피.방화설비 허.저수지 고.방풍설비 노.방수설비 도.사방설비 로.방조설비 모.하수도(종말처리장은 제외) 보.도축장 소.장례식장 오.종합의료시설 조.폐차장	
	14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2조의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	도시계획법 제24조 제5항 내지 제6항
	15	○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도시계획법 제26조
	16	○ 도시계획결정의 실효 고시	도시계획법 제27조 제2항
	17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이에 관한 공람 및 고시	도시계획법 제61조 내지 제63조
	18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 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도시계획법 제70조
	19	○ 도시계획구역외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준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위임된 시설에 한함)	도시계획법 제97조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교통도로과 소관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삭제하며, 제7호 내지 제18호를 제6호 내지 제17호로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도로과	1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자동차저당법 제4조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등	자동차관리법 제7조	
		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	동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여부신고와 말소사실증명서 교부	동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동법 제14조	
		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동법 제16조	
		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취소, 사업 정지명령	동법 제20조, 제21조	
		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	동법 제27조	
		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동법 제28조	
		차.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운행정지명령 및 임시검사명령	동법 제37조	
		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	
		2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52조
			가. 등록원부의 비치 관리등	동법 제7조
			나. 사용신고의 거부	동법 제9조
			다. 도난신고의 처리	동법 제13조
			라.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동법 제18조
마.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동법 제20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도로과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 운행정지명령 및 정비,원상복구명령</li> <li>사. 사용신고에 관한 이의신청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법 제37조</li> <li>동법 제28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계조종사면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의 수리</li> <li>나. 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실시</li> <li>다. 조종사의 면허발급 및 면허증 재교부</li> <li>라. 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처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li> <li>동법 제29조</li> <li>동법 제26조</li> <li>동법 제28조</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li> <li>나. 등록사항의변경,이전,갱정처리</li> <li>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li> <li>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li> <li>마. 등록번호표의 반납</li> <li>바. 식별관등록번호표의 재생김 명령등</li> <li>사.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 및 변경신고 수리, 지정취소</li> <li>아.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li> <li>자. 보고 및 검사</li> <li>차. 과태료 부과징수,이의신청 처리</li> <li>카. 건설기계저당권 등록</li> <li>타. 매매용건설기계의 신고</li> <li>파. 건설기계의 강제처리</li> <li>하. 건설기계사업(대여,매매업) 신고의 수리</li> <li>거.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수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계관리법 제3조</li> <li>동법 제3조, 제5조</li> <li>동법 제6조</li> <li>동법 제7조</li> <li>동법 제9조</li> <li>동법 제11조</li> <li>동법 제8조의2</li> <li>동법 제16조</li> <li>동법 제35조</li> <li>동법 제44조</li> <li>건설기계저당법 제5조</li> <li>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li> <li>동법 제34조의2</li> <li>동법 제21조</li> <li>동법 제24조</li> </ul>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도로과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도·궤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사기간의 지정</li> <li>나. 준공검사</li> <li>다. 시설변경의 허가</li> <li>라. 명의변경신고 등의 수리</li> <li>마. 필요사항의 보고명령 및 시설에 대한 검사지시</li> <li>바. 전용삭도등에 대한 준용사항(사용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준공검사, 시설변경의 신고, 사용의정지, 폐지청문, 전용삭도·궤도의 양도·양수·합병·해산·휴지·폐지·상속신고의 수리, 안전검사·보고·검사·수수료)</li> <li>사. 삭도·궤도사업의 허가 및 허가의 변경</li> <li>아.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청문</li> <li>자. 안전검사, 검사의최고, 안전검사 명령, 사용정지, 검사기간연장 및 유예</li> <li>차.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삭도·궤도법 제8조</li> <li>동법 제13조</li> <li>동법 제14조</li> <li>동법 제17조</li> <li>동법 제30조</li> <li>동법 제34조</li> <li>동법 제4조</li> <li>동법 제16조</li> <li>동법 제27조</li> <li>동법제38조</li> </ul>

[별표5]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8조

제1항중 “별표3과 같다”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별표3을 삭제한다.

# 신 구조 문 대 비 표

(별표1)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령
경제과	1-20	(생 략) (신 설)		경제과	1-20 21	(현행과 같음) ○ <u>통신판매에 관한 업무</u> <u>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 사항의 신고수리</u> <u>나. 통신판매업자의 휴·폐업의 신고수리</u> <u>다. 영업의 정지</u>  <u>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u>	방문판매등 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률 제24조  동법률 제26조  동법률 제64조
사 회 복 지과	1	○사회복지법인의 자산 운용 및 시설업무의 지도·감독 등	사회복지사 업법제37조	사 회 복 지과	1	○사회복지법인의 자산 운용 및 시설업무 의 지도감독등	사회복지사 업법제51조
	2	○장애인복지시설의 허가취소,사업정지 또는 폐지명령	장애인복지 법 제41조		2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사회복지사 업법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 10조
	3	○장애인복지시설의 보고명령,조사,검사	장애인복지 법제41조			(삭 제)	
	4	○사회복지법인 임원 취임승인,감사추천	사회복지사 업법제14조 제5항			(삭 제)	
보 건 위 생과	5-16	(생 략)		보 건 위 생과	3-14	(현행과 같음)	
	1-41	(생 략)			1-41	(현행과 같음)	
	42	○소독업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전염병예방 법제40조의 3		42	○소독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전염병예방 법제40조의 3
	43-49	(생 략)			43-49	(현행과 같음)	
	50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다 만,면허증 최초 교부 당시 주소지가 타시 도인 경우는제외)	공중위생법 제9조,동법 시행규칙제 17조내지제 20조		50	○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다만,면허증, 최초 교부당시 주소지 가 타시도인 경우 는 제외)	공중위생 관리법제6 조,동법시 행규칙제9 조내지제1 0조
	51	(생 략)			51	(현행과 같음)	
	52	○ 이 미용사면허취소 및 업무정지(단 면 허취소는 면허증 최 초 교부당시 주소지 가 타시도인 경우는 제외)	공중위생법 제23조 제2 항, 동법시 행규칙제41 조의2제3항		52	○ 이·미용사면허취소 및 면허정지(단 면 허취소는 면허증 최초 교부당시 주 소지가 타시도인 경우는 제외)	공중위생 관리법제7 조제1항동 법시행규 칙제12조
53	(생 략)		5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사 무 명	근 거 법령	분야별	일련	사 무 명	근 거 법령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농 산 지 원 과	1-12 13	(생 략) ○ <u>농지개발계획의경비 부과인가</u>	<u>농지개발조 합법제88조 제3항</u>	농 산 지 원 과	1-12 13	(현행과 같음) ○ <u>충청북도 수리계 관련업무</u>  <u>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u>  <u>나. 수리계조직 및 등록</u>  <u>다. 수리계규약 제출</u>  <u>라. 수리계 예산 및 인력지원</u>  <u>마. 기반시설의 개 · 보수 등에 필 요한 경비부과 및 납기인가</u>  <u>바. 부과금액 재조 정 및 재결에 관한 사항</u>  <u>사.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u>  <u>아. 해산승인 및 기반시설의폐지 관리자의 지정</u>  <u>자. 지도감독</u>	농업기반 공사및농 지관리기 금법제43 조 충청북도 수리계관 리조례제 3조 동조례 제4조, 제5조 동조례 제6조 동조례 제10조 동조례 제11조 동조례 제12조 동조례 제13조 동조례 제15조 동조례 제16조
원 예 유 통 과	1	○ <u>양곡매매업의 신고 내용 변경 및 영업 의 폐지 또는 휴업 처리등 신고의수리</u>	<u>양곡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u>	원 예 유 통 과	1	○ <u>정부양곡관리업무</u>  <u>가.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u>  <u>나. 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양곡가공 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u>	양곡관리 법제19조 제1항 동법제36 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원 예 유통과				원 예 유통과		다. 양곡가공업에 대한 영업의 정지 등록의 취소 (삭 제)	동법제21조 제1항	
	2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매매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제36조 제1항				(삭 제)	
	3	○ 양곡가공업의 등록	동법제19조 제1항				(삭 제)	
	4	○ 양곡가공업 시설의 양도·임대·변경·신고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신고수리	동법제19조 제3항 및 동 법시행령제 22조				(삭 제)	
	5	○ 양곡가공업에 대한 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	동법제21조 제1항				(삭 제)	
	6	○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양곡가공업을 영위한 자 등에 대한 벌과금 및 과태료 의 부과·징수	동법제19조 제1항 및 제3 조 제36조				(삭 제)	
	7	○ 갑종가공업의 양도· 임대·신고등의 수리	동법제1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제22 조				(삭 제)	
	8	○ 양곡가공업 시설의 변경사항 확인	동법시행령 제22조 시행 규칙제6조				(삭 제)	
체육청 소년과	1	○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나. 신고필증 교부 및 재교부 다.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지정명령 라. 휴폐업 신고수리	체육시설업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2조 동법시행규 칙제25조 동법 제30조 동법 제32조	체육청 소년과	1	○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업무 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나. 청소년수련시설 폐지의 신고수리 다. 청소년수련 시설의 등록수리 라. 청소년수련 시설의 등록증교부	청소년기본 법제26조 제 2항 동법시 행령제29조 제3항 동법제34조 의2 제2항 동법제26조 제3항, 제4 항, 동법시 행령제33조 제1항, 제2 항 동법제26조 제4항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체육청 소년과		<u>마.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u> <u>바.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u> <u>사. 등록취소등처분</u> <u>아. 체육시설이용료에 관한 필요조치</u> <u>자. 자료제출 명령, 검사</u> <u>차. 과태료의 부과 징수</u> <u>카. 시설업자의 청문</u>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 제39조 동법제44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체육시설업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 36조	체육청 소년과		<u>마. 청소년수련 시설에대한시정명령</u> <u>바. 청소년수련시설에대한 행정처분</u> <u>사. 청소년수련시설에대한 보형가입 (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동법제29조, 동법시행규칙제21조 동법제31조, 동법시행규칙제23조 동법 제33조
지역 개발과	1-9	(생략) (신설)		지역 개발과	1-9 10	(현행과 같음) ○ <u>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사항</u> <u>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u> <u>나. 광고물등의 표시·신고수리에 관한사항</u> <u>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사항</u> <u>라. 가림간판규격의 설정</u> <u>마.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u>	옥외광고물 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동법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동법제3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7항 및 제20조 제6항 동법제9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사무명	근거	분야	일련	사무명	근거
번호	번호		법령	별	번호		법령
지역 개발과				지역 개발과		<u>바. 안전도검사 업부의 위탁</u>  <u>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u>  <u>아. 옥외광고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u>  <u>자.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취소</u>  <u>차. 영업정지등에 관한 사항</u>  <u>카. 허가·신고· 안전도검사·옥외 광고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u>  <u>타. 과태료의 부과징수</u>	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4조 동 법시행령 제 44조 및 제45 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20조
		(신 설)			11	○ 전문건설업에 관한 다음사항  가. 등록  나. 변경사항 신고수리  다. 양도·범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수리  라. 업체에 대한 보고·조사·검사 · 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 요구  마. 시정명령· 지시  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동법제 9조의2  동법 제17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81조  동법 제82조  동법 제83조

현				행			
분야별	일련	사무명	근거	분야별	일련	사무명	근거
번호	번호		법령	번호	번호		법령
지역 개발과				지역 개발과		아. 청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 차. 등록대장의 작성·보관 12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와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13 ○ 도시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산도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바.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사. 광장(중로이하의 도로에 접한광장) 아. 공원(어린이공원에 한함) 자. 관망탑 차. 공공용지 카. 수도 타. 전기공급설비(변전소에 한함) 파. 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 하. 방송·통신시설	동법 제86조 동법 제101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도시계획법 제24조
		(신 설)					
		(신 설)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지 역 개발과		(신 설)		지 역 개발과		<u>거. 시장</u> <u>너. 열공급설비</u> <u>더.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u> <u>러. 운동장(종합운 동장 및 골프 장 제외)</u> <u>머. 공공청사(국가 및 도기관 청사 제외)</u> <u>버. 도서관</u> <u>서. 문화시설</u> <u>어. 연구시설</u> <u>저. 사회복지시설</u> <u>처. 공공직업훈련 시설</u> <u>키. 청소년수련시설</u> <u>티. 우수지</u> <u>피. 방화설비</u> <u>히. 저수지</u> <u>고. 방풍설비</u> <u>노. 방수설비</u> <u>도. 사방설비</u> <u>로. 방조설비</u> <u>모. 하수도(종말처 리장은 제외)</u>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지역 개발과		(신설)		지역 개발과		보. 도축장	
		(신설)				소. 장례식장	
		(신설)				오. 종합의료시설	
		(신설)				주. 폐차장	
		(신설)			14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2조의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및 고시	도시계획법 제24조제5항내지제6항
		(신설)			15	○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도시계획법 제26조
	(신설)		16	○ 도시계획결정의 실효고시	도시계획법 제27조 제2항		
	(신설)		17	○ 도시계획법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이에 관한 공람 및 고시	도시계획법 제61조내지 제63조		
	(신설)		18	○ 도시계획법시설 사업 공사완료 보고서 수리, 준공 검사 및 준공검사 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도시계획법 제70조		
	(신설)		19	○ 도시계획구역외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준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위임된 시설에 한함)	도시계획법 제97조		

현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사무명	근거	분야별	일련	사무명	근거	분야별	일련	사무명	근거	분야별	일련	사무명	근거
번호	번호		법령	번호	번호		법령	번호	번호		법령	번호	번호		법령
교통 도로과	1	○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바.(생략)  <u>사. 등록사항 확인 명령과 등록사항 확인표의 교부 및 부확명명령</u>  <u>아.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취소, 사업정지명령</u>  <u>자.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 및 운행 정지명령</u>  <u>차. 자동차의 강제 처리</u>  <u>카.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u>  <u>타.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u>  <u>파. 자동차구조 및 장치변경승인</u>  <u>하.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임시검사명령</u>  <u>거. 정비관리자의 선임, 해임신고의 처리 및 해임명령</u>  <u>너. 차고시설확보 신고의 처리</u>	동 법 제17조  동법제20 조 제21조  동법 제24조  동 법 제26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동 법 제34조  동 법 제38조  동 법 제39조	교통 도로과	1	○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바.(현행과같음)  <u>사.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 취소, 사업정지명령</u>  <u>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u>  <u>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u>  <u>차.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운행정지명령 및 임시검사명령</u>  <u>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 의 통지</u>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동법제20 조, 제 21 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7조  동법시행 규칙제77 조의2								

현행				개정안			
분야별 번호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별 번호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교 통 도로과	2	<p>○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에 관한 다음 의 권한</p> <p>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변경 폐지신고의 처리 와 번호지정</p> <p>나.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서 준용 하는 다음의 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원부의 비치 관리등</li> <li>· 사용신고의 거부</li> <li>· 사용폐지신고의 처리</li> <li>· 등록사항의 확인 명령</li> <li>· 사용신고필증 재교부</li> <li>·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 지정</li> <li>· 개선명령, 운행 정지명령 및 정비, 위상복구 명령</li> <li>· 이륜자동차 감제처리</li> <li>· 사용신고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li> <li>· 구조장치변경승인</li> </ul>	<p>자동차관리 법제48조</p> <p>동 법 제 7조</p> <p>동 법 제 9조</p> <p>동 법 제13조</p> <p>동 법 제17조</p> <p>동 법 제18조</p> <p>동 법 제20조</p> <p>동법제24조, 제37조</p> <p>동 법 제26조</p> <p>동 법 제28조</p> <p>동 법 제34조</p>	교 통 도로과	2	<p>○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에 관한 다음 의 권한(이륜자동 차에 대한준용)</p> <p>가. 등록원부의 비치관리등</p> <p>나. 사용신고의 거부</p> <p>다. 도난신고의 처리</p> <p>라. 사용신고필증 재교부</p> <p>마.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p> <p>바. 운행정지명령 및 정비, 위상 복구 명령</p> <p>사. 사용신고에 관한 이의신청처리</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자동차관 리법제52 조</p> <p>동법 제7조</p> <p>동법 제9조</p> <p>동법 제13조</p> <p>동법 제18조</p> <p>동법 제20조</p> <p>동법 제37조</p> <p>동법 제28조</p>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도로과	3	○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교통도로과	3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p>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 처리</p> <p>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취소</p> <p>다.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및 휴업·폐업에 관한 신고의 처리</p> <p>라.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명령</p> <p>마. 자동차관리법 제38조제3항에 의한 점검정비 책임자의 해임명령</p> <p>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명령</p> <p>사. 보고명령 및 검사</p> <p>아. 단속</p> <p>자. 과징금의 부과 처분 및 징수</p> <p>차. 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함)</p> <p>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자동차관리법 제53조</p> <p>동법 제54조</p> <p>동법 제55조</p> <p>동법 제56조</p> <p>동법 제64조</p> <p>동법 제66조</p> <p>동법 제72조</p> <p>동법 제73조</p> <p>동법 제74조</p> <p>동법 제75조</p> <p>동법 제84조</p>			<p>가.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의 수리</p> <p>나. 조종사의 정기 적성검사 실시</p> <p>다. 조종사의 면허 발급 및 면허증 재교부</p> <p>라. 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p> <p>동법 제29조</p> <p>동법 제26조</p> <p>동법 제28조</p>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4	○ 건설기계 등록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p>가.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의 수리한점</p> <p>나. 조종사의 정기 적성검사 실시</p>	<p>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p> <p>동법 제29조</p>			<p>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p> <p>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갱정처리</p>	<p>건설기계관리법 제3조</p> <p>동법 제3조, 제5조</p>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 도로과		다. <u>조종사의 면허 발급 및 면허증 재교부</u>	동법 제26조	교통 도로과		다. <u>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u>	동법 제6조
		라. <u>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u>	동법 제28조			라. <u>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부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u>	동법 제7조
5.	○ <u>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u>	가. <u>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 교부</u>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5.	마. <u>등록번호표의 반납</u>	동법 제9조
						바. <u>식별근관등록 번호표의 재새김 명령등</u>	동법 제11조
						사. <u>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 및 변경신고 수리, 지정취소</u>	동법 제8조의2
						아. <u>정기점검에 관한 사항</u>	동법 제16조
						자. <u>보고 및 검사</u>	동법 제35조
						차. <u>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처리</u>	동법 제44조
						칸. <u>건설기계저당권 등록</u>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타. <u>매매용건설기계의 신고</u>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파. <u>건설기계의 강제처리</u>	동법 제34조의2
						하. <u>건설기계사업 (대여, 매매업) 신고의 수리</u>	동법 제21조
						거. <u>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수리</u>	동법 제24조
						○ <u>삭도·케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u>	삭도·케도법 제8조
가. <u>공사기간의 지정</u>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 도로과		나. <u>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개정처리</u>	동법 제3조, 제5조	교통 도로과		나. <u>준공검사</u>	동법 제13조
		다. <u>등록말소 및 확인서 교부</u>	동법 제6조			다. <u>시설변경의 허가</u>	동법 제14조
		라. <u>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u>	동법 제8조			라. <u>명의변경신고 등의 수리</u>	동법 제17조
		마. <u>등록번호표부착, 봉인표포식 및 새김명령</u>	동법 제8조			마. <u>필요사항의 보고명령 및 시설에 대한 검사지시</u>	동법 제30조
		바. <u>등록번호표 반납</u>	동법 제9조			바. <u>전용삭도 등에 대한 준용사항(사용신고 및 신고사항의 도검, 준공검사, 시설변경의 신고, 사용의 정지, 폐지청문, 전용삭도·궤도의 양도·양수·합병·해산·휴지·폐지·상속신고 수리, 안전검사·보고·검사·수수료)</u>	동법 제34조
		사. <u>식별공관등록번호표의 재새김명령 등</u>	동법 제11조			사. <u>삭도·궤도사업의 허가 및 허가의 변경</u>	동법 제4조
		아. <u>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u>	동법 제8조의2			아. <u>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청문</u>	동법 제16조
		자. <u>정기점검에 관한 사항</u>	동법 제16조			자. <u>안전검사, 검사의 최고 안전검사 명령, 사용정지, 검사기간 연장 및 유예</u>	동법 제27조
		차. <u>건설기계의 구조 변경 승인</u>	동법 제17조			차. <u>과태료의 부과 처분 및 징수</u>	동법 제38조
		카. <u>보고 및 검사사의 면허증 재교부</u>	동법 제35조			(삭 제)	
		타. <u>과태료부과·징수의의신청 처리</u>	동법 제44조			(삭 제)	
		파. <u>건설기계저당권 등록</u>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 통 도로과	6	<p>○ <u>삭도·궤도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u></p> <p>가. <u>공사시행의 인가 및 인가받은사업의 변경, 공사기간의 지정</u></p> <p>나. <u>도로의 유지·보수 및 도로원상회복</u></p> <p>다. <u>준공검사</u></p> <p>라. <u>시설변경의 인가</u></p> <p>마. <u>사업개시 등의 신고</u></p> <p>바. <u>사업의 양도·양수·합병·해산·상속 신고의 수리</u></p> <p>사. <u>사업의 휴지 신고수리</u></p> <p>아. <u>삭도·궤도사업 관리의 위탁 및 수탁</u></p> <p>자. <u>궤도 접속지에서 시설의 공용 또는 변경명령</u></p> <p>차. <u>개선명령</u></p> <p>카. <u>사고의 보고</u></p> <p>타. <u>필요사항의 보고 명령 및 시설에 대한 검사지시</u></p> <p>파. <u>임원의 해임명령,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명령</u></p>	<p>삭도궤도법 제7조, 제8조 제1항</p> <p>동법제11조, 제12조</p> <p>동 법 제13조</p> <p>동 법 제14조</p> <p>동 법 제15조</p> <p>동법제17조 제17조의2</p> <p>동 법 제18조</p> <p>동 법 제19조 제1항</p> <p>동법 제25조 제2항</p> <p>동법 제28조 제1항</p> <p>동 법 제29조</p> <p>동 법 제30조</p> <p>동 법 제32조</p>	교 통 도로과		(삭 제)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교 통 도로과		<u>하. 전용삭도등에 대한 준용사항(공사시행 의허가, 준공검사, 시설변경의 인가, 사업개시신고수리, 사업의양도· 양수·합병· 해산·휴지·삼속 신고수리, 사고자의 보고·보고·검사· 수수료</u>	동 법 제34조	교 통 도로과		(삭 제)	
	7-18	(생 략)			6-17	(현행과 같음)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경 제 과>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통신판매업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통신판매업자의 휴·폐업의 신고등)**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영업의 정지)** ①시·도지사는 통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7 (생략)

② (생략)

**제6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요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요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요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③ ~ ⑥ (생략)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④ (생략)

⑤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임원의 취임승인신청) 법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설립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법인설립허가신청시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1부
2.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서류(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한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다만,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제51조(감독)** ①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시설의개선,사업의 정지,폐쇄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사업의 정지,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보건위생과>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소독업의 신고)** ①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3 (생략)

② (생략)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농산지원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수리계) ①시·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조성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⑤ (생략)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

제3조(기반시설관리)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1조(경비의 부과)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5조(수리계 해산)

제16조(지도감독)

**<원예유통과>**

**【양곡관리법】**

제19조(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①대통령이 정하는 양곡가 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99. 1. 21)

② (생략) ③ (삭제 '99. 1. 21)

제21조(영업정지등) ①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양곡가공업자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및 ④(삭제 '99. 1. 21)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인 양곡가공업을 영위한 자
3. (생략) ②~⑤ (생략)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9조(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2(생략) ②~④ (생략)

**제22조 (삭제 '99. 7. 29)**

**<체육청소년과>**

**【청소년기본법】**

**제26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수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⑥ (생략)

제29조(시정명령)

제31조(허가취소)

제33조(보험가입)

제34조의2(수련시설의 폐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지역개발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6 (생략)

② (생략)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①대통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10조(위반에 대한조치)**

**제1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제13조(허가의 취소)**

**제14조(영업의 정지등)**

**제16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제20조(과태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 제81조(시정명령등)
- 제82조(영업정지등)
-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 제86조(청문)
- 제10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도시계획법】

제24조(도시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8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제26조(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제27조(도시계획결정의 실효)

제61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제62조(서류의 공람 등)

제63조(실시계획의 고시)

제70조(공사완료 공고)

제97조(도시계획구역외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준용)

### <교통도로과>

#### 【자동차관리법】

제17조(등록사항확인표의 부착명령등) ①시·도지사는 자동차

의 등록사항을 일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등록사항을 확인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생략) 제17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24조(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등)**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 및 장식의 제거
2. 알아보기 곤란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교체 또는 개선
3.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99. 4. 15 시행일 99.10.16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 4. 15 시행일 '99. 10. 16)

③ ~ ④ (생략)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9. 4. 15 시행일 '99. 10. 16)

**제38조(정비관리자의 선임등)** ①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비관리자(이하“정비관리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종 및 대수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정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③ (생략)

**제38조 삭제** '99. 4. 15 시행일 '99. 10. 16

**제39조(차고시설)** ①자동차소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종 및 대수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확보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삭제** '99. 4. 15 시행일 '99. 10. 16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 ①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4. 15, 시행일 '99. 10. 16)

② ~ ④ (생략)

**제54조 ~ 제84조** (생략)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중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매월1회이상 조사하여 그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99.12.31)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등록의 표지)** ①등록된 건설기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 봉인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삭제 '99. 1. 29)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등)** ①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 2. 8)

② (생략)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신고등)** ①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의무)** 건설기계사업자는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99. 1. 29)

**【삭도·궤도법】**

**제4조(사업허가등)**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공사준공)**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석도사업자”라 한다)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궤도사업자”라 한다)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준공하여야 한다.(개정 '99. 2. 8)

**제16조(허가의 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석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17조(명의변경신고등)** ①석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궤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이 석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그 법인을 합병 또는 해산하고자 할 때. 다만, 석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생략)

**제27조(안전검사)** ①석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의2, 제18조 내지 제21조(삭제)**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삭제)**

**제34조(전용석도등에 대한 준용) (생략)**